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(박민규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7309

발의연월일: 2025. 1. 7.

발 의 자: 박민규·강준현·채현일

윤후덕 • 박정현 • 윤준병

김문수 · 박희승 · 김우영

서영석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계산할 때 상장주식에 대하여 평가 기준일 이전·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최종 시세가액의 평 균액을 그 평가 가액으로 하도록 하고 있음.

그런데 기업의 대주주들이 상속세 및 증여세 부담을 덜기 위하여 자사의 주식가격이 상승하지 못하도록 억제하여 대한민국의 주식시장 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상속세 및 증여세 계산시 상장주식의 평가 가액이 해당 기업의 순자산가치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63조 등).

법률 제 호

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0조제1항제1호 중 "제63조제2항"을 "제63조제3항"으로, "제63조제1항제1호가목"을 "제63조제1항제1호가목 및 같은 조 제2항"으로 한다. 제6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3항(종전의 제2항) 각호 외의 부분 중 "제1항제1호"를 "제1항제1호 및 제2항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(종전의 제3항) 전단 중 "제1항제1호, 제2항"을 "제1항제1호, 제2항"을 "제1항제1호, 제2항"을 "제1항제1호, 제2항"을 "제1항제1호, 제2항 및 제3항"으로, "제1항제1호 및 제2항"을 "제1항제1호, 제2항 및 제3항"으로 한다.

② 제1항제1호가목에도 불구하고 상장주식을 평가한 1주당 가액이 해당 주권상장기업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주당 순자산가치를 초 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(유가증권 등의 평가에 관한 적용례) 제6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

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유가증권 등을 평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60조(평가의 원칙 등) ① 이 법	제60조(평가의 원칙 등) ①
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	
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	
시일 또는 증여일(이하 "평가	
기준일"이라 한다) 현재의 시	
가(時價)에 따른다. 이 경우 다	
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서는	
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	
른 금액을 시가로 본다.	
1.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	1
관한 법률」에 따른 증권시장	
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	
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	
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	
령으로 정하는 주식등(<u>제63조</u>	<u>제63조</u>
<u>제2항</u> 에 해당하는 주식등은	제3항
제외한다)의 경우: 제63조제1	<u>제63조제1</u>
<u>항제1호가목</u> 에 규정된 평가방	항제1호가목 및 같은 조 제2
법으로 평가한 가액	<u> </u>
2. (생 략)	2. (현행과 같음)
② ~ ⑤ (생 략)	② ~ ⑤ (현행과 같음)
제63조(유가증권 등의 평가) ①	제63조(유가증권 등의 평가) ①

(생 략) <신 설>

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에 대해서는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인의 사업성,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.

1. ~ 3. (생략)

③ 제1항제1호, 제2항 및 제60 조제2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주주등(이하 이항에서 "최대주주등"이라 한다)의 주식등(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 및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

(현행과 같음)
② 제1항제1호가목에도 불구하
고 상장주식을 평가한 1주당
<u>가액이 해당 주권상장기업의</u>
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주당 순
자산가치를 초과하는 경우 그
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.
<u>③</u>
제1항제1호 및 제2항
 1. ~ 3. (현행과 같음)
1. ~ 3. (현행과 같음)

「법인세법」 제14조제2항에 따른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)에 대해서는 제1항제1호 및 제2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 또는 제60조제 2항에 따라 인정되는 가액에그 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한다.이 경우 최대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등의 계산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<u>④</u> (생 략)

제1항제1호, 제2항 및 제3
<u>ठॅ</u> }
<u>⑤</u> (현행 제4항과 같음)